

2020년도 제2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2020. 5.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3,210,299	3,210,362	△63	△0.002%
일반회계	284,958	285,021	△63	△0.02%
보조금	278,931	278,994	△63	△0.02%
주택사업특별회계	2,901,983	2,901,983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358	23,358	-	-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3,483,377	3,484,084	△707	△0.02%
일반회계	744,221	744,928	△707	△0.09%
사업비	421,057	421,764	△707	△0.17%
주택사업특별회계	2,729,620	2,729,620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36	9,536	-	-

II.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	141	174	△33	△18.9
국제교류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	35	170	△135	△79.4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13	613	△300	△48.9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8	276	△89	△32.2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시장 안전점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2	742	△150	△20.2

Ⅲ. 검토의견

1. 세입 관련

- '20년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정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6천 3백만원 감액된 3조 2,102억 9천 9백만원($\Delta 0.002\%$)이며, 이는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국고보조금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	122	185	$\Delta 63$	$\Delta 34.1\%$

2. 세출 관련

- 주택건축본부 소관 '20년 추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3조 4,840억 8천 4백만원) 대비 7억 7백만원 감액($\Delta 0.02\%$)된 3조 4,833억 7천 7백만원으로, 추경은 일반회계에서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사 연기 또는 사업규모 축소,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편성 등에 따른 감추경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업무 여비 감액	141	174	$\Delta 33$	$\Delta 18.9$
국제교류 강화 사업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UIA2020RIO 세계건축대회 연기('21.7)에 따른 감추경	35	170	$\Delta 135$	$\Delta 79.4$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규모 축소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 예상 점검 물량 축소에 따른 위험 건축물 발굴 감소)	313	613	$\Delta 300$	$\Delta 48.9$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국비 보조금 조정(감 63백만원) 및 매칭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감추경(감 26백만원)	($\times 122$) 188	($\times 185$) 276	($\times \Delta 63$) $\Delta 89$	($\times \Delta 34.1$) $\Delta 32.2$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안전점검 점검 수량 감소	592	742	$\Delta 150$	$\Delta 20.2$

-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주택건축본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¹⁾, 추가경정예산은 국외업무여비(5천만원)에서 3천 3백만원 감액 편성됨.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정지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체적으로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이해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141	174	△33
국외업무여비	50	17	△33

- 그럼에도 국외업무여비 중 일부를 유지한 사유는 ‘총괄건축가와 함께하는 선진건축문화탐방²⁾’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예산의 집행여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제교류 강화 사업’은 당초 ‘UIA2020 RIO 세계건축대회³⁾’ 참가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코로나19의 급격한 전세계 확산으로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용역을 타절하고 명시이월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민생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예상 집행잔액을 감추경하는 사항임⁴⁾.
- 서울시는 직전 대회인 ‘UIA2017 서울’ 개최 도시로서 ‘UIA2020 RIO’ 측의 참석초청에 따른 것으로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된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예산 세부내역에는 위원회 운영비 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특정업무경비, 국외업무여비 등이 있음.
 2) 도시·건축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건축문화 전문 확대 및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총괄건축가 주도로 2012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음.
 3) 장소 : Rio de Janeiro, Brazil
 일시 : 당초 2020년 7월 19일 ~ 24일 → 변경 2021년 7월 18일 ~ 22일
 4) 세계건축대회 참가 관련 예산 외 서울시 도시건축정책 홍보자료 제작 비 등 35백만원은 유지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전문가 점검을 통해 확인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비를 자치구에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문가 점검에 제약이 있어 재난취약시설물 발굴 수가 축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 보조금 6억원 중 3억원을 감추경하는 사항임.
- 이 사업은 재난취약시설 등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20.4월 5개 자치구에 대해 7천 2백만원 을 한 차례 지원하였고, 금년 내 두 차례 정도 추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해됨⁵⁾.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313	613	△300
자치단체자본보조	300	600	△300

-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⁶⁾’ 사업은 국비 보조에 따른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당초 1억 8천 4백만원에서 6천 2백 5십만원이 감액(△34.1%)되어, 시비 지원 비율에 따라 2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8천 8백 5십만원을 감추경하는 사항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122) 188	(×185) 276	(×△63) △8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2) 173	(×185) 261	(×△63) △89

5) 주관부서에서 예상하는 금년도 예상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분(통계목)	2020예산현액	집행액(비율)	실적	연말 예상집행액(비율)
계	613	73 (11%)	-	313 (5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	72 (12%)	8개소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300 (50%)
사무관리비	13	1 (8%)	자문위원 수당 지급	13 (100%)

- 6) ‘내진성능평가 비용 보조’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보조’로 구성되며, ‘내진성능평가 비용 보조’는 국비:지자체:자부담=6:3:1 (지자체는 시:구=7:3 부담)이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보조’는 국비:지자체:자부담=3:3:1 (지자체는 시:구=7:3 부담)임.

-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은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임의관리대상 건축물)과 건축공사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권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점검 수량이 감소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보조규모의 축소·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7)
 - ‘공사장 집중안전점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건축심의 축소로 인해 금년도 건축허가 건수와 신규 공사장 발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점검대상 공사장을 당초 1,800개에서 1,500개로 축소·조정하게 됨에 따라 총 1억 5천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592	742	△1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직권안전점검	348	420	△72
찾아가는 안전점검	32	70	△38
공사장 집중안전점검	212	252	△40

- 참고로 ‘18년 7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8) 이후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이 신설·보강되고9)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자치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10) 시에 요청하는 보조금 규모가 감소하고 자치구 자체 사업이 증가

7) 실제로 ‘직권안전점검’의 경우 보조금을 미신청한 자치구는 2개소(중구, 관악구)이며, ‘찾아가는 안전점검’의 경우 8개소(종로구, 중구,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임.

8) 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서울특별시조례 제6900호, 2018.7.19.).

9) 2020.3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5개 자치구 모두 설치됨.

10)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설치하는 사항이며, 특별회계 조례는 2020.3월 기준 14개구 제정됨.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지구 수요조사와 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히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은정
연락처	02-2180-8208
이메일	urbanth@seoul.go.kr

【붙임】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현황 (2020.3월 기준)

자치구	센터설치 현황	직원 현황				특별회계 조례제정 현황*
		계	일반직	전문인력(임기제)		
				일반	시간선택제	
종로구	2019.01.01.	7명	4명	-	3명	완료(20%)
중구	2019.01.01.	4명	4명	-	-	-
용산구	2018.11.19.	5명	4명	-	1명	-
성동구	2019.01.21.	4명	3명	-	1명	-
광진구	2019.03.25.	5명	3명	-	2명	-
동대문구	2019.01.01.	4명	2명	-	2명	완료(30%)
중랑구	2019.01.21.	5명	4명	-	1명	완료(30%)
성북구	2020.01.01.	4명	3명	-	1명	완료(20%)
강북구	2019.07.17.	4명	4명	-	-	완료(30%)
도봉구	2019.01.14.	5명	3명	2명	1명	완료(40%)
노원구	2019.07.17.	4명	3명	-	-	완료(70%)
은평구	2019.01.01.	6명	5명	-	1명	-
서대문구	2019.02.01.	3명	3명	-	-	완료(30%)
마포구	2019.08.01.	3명	3명	-	-	완료(30%)
양천구	2019.07.17.	4명	4명	-	-	-
강서구	2019.02.01.	5명	4명	-	1명	-
구로구	2019.07.17.	4명	4명	-	-	-
금천구	2019.07.01.	5명	3명	-	2명	-
영등포구	2019.01.01.	8명	5명	-	3명	완료(30%)
동작구	2019.01.01.	8명	4명	4명	-	완료(20%)
관악구	2019.01.21.	6명	5명	-	1명	-
서초구	2019.07.15.	4명	3명	-	1명	완료(10%)
강남구	2019.01.21.	6명	3명	-	3명	완료(30%)
송파구	2019.07.01.	5명	3명	-	2명	-
강동구	2018.09.10.	4명	2명	-	2명	완료(30%)
계	25개구	122명	88	2개구(6	17개구(28명)	14개구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한 비율을 의미)